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호
----------	-----------

제출년월일 : 2022. 2.

발 의 자 : 유진선 의원

구 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58%(통계청 2020년 신혼부부 통계)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복지 대상자에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추가하고, 한부모가족과 무주택 다자녀가정도 포함시켜 공공주택의 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청년층·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이에 필요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거복지 대상자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주거복지사업 규정 정비(안 제6조)
- 주거복지센터 운영 규정 정비(안 제10조)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용인시”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10조제3항 중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도시건설위원회	유진선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주거복지 대상자”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 style="padding-left: 20px;">라. (생략)</p> <p>제6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안정·주거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용인시(이하 “시”라 한다)</u>-----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u></p> <p style="padding-left: 20px;"><u>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u></p> <p style="padding-left: 20px;"><u>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u></p> <p style="padding-left: 20px;"><u>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u></p> <p style="padding-left: 20px;"><u>아.</u> (현행 라목과 같음)</p> <p>제6조(주거복지사업) ----- ----- ----- -----.</p>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제10조(주거복지센터)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주거복지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